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증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조례로 제정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신설 안 제10조의 2)

○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설치의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신설 안 제13조의2, 제13조의 3, 제13조의 4)

3.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조례로 제정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신설 안 제10조의2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0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에게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여하고 있고, 그 제한조치의 내용으로서는 ①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동조동항 제1호) ②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동조동항 제2호) ③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계획의 설치(동조동항 제3호)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계획의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세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동조 제2항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신설된 안 제10조의2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안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1항),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이용권자와 그 요금에 관한 사항(제2항),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과 일반인의 이용에 관한 사항(제3항),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이용위반에 따른 사항(제4항) 등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주차장법 제10조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설된 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안 제13조의4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적용 범위(안 제13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안 제13조의3)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안 제13조의4)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의 규정형식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 제13조의2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해석규정이고, 조례에 있어서 해석규정은 일반적으로 당해 조례의 해석에 대한 지침, 기준,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안 제13조의3은 그 본문에서도 명백히 규정한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데만 적용되어 안 제13조의4와의 관계에서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별개의 조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3조의3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등에 관한 용어정의를 규정하는 정의규정이고, 정의규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조문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일반 용법과는 달리 쓰여지는 경우 그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나, 안 제1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는 용어는 안 제13조의4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문을 두어 용어정

의를 할 것이 아니라 안 제13조의4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13조의2와 안 제13조의3은 안 제13조의4(실체적 규정임)와의 관계에서만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제13조의2와 안 제13조의3을 별개의 조문으로 두는 것보다는 안 제13조의4에 이들 사항을 규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13조의3 제3호 중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안 제13조의4 제2항 중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을 “법 제19조제5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조례 제1조에서는 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입법경제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차장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시행령”을 「이하 “령”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표 1 과징금처분 대상에서 삭제된 3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자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대해서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되(제24조 제1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24조의2제1항).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우리구 조례도 주차장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 과징금처분 대상 3건 중 2건(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은 1999년 2월 8일자로 종전 주차장법 제24조 제1항 제2호가 개정·삭제되었던 것에 따른 것이고, 1건(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과 관련하여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 과태료처분 대상에서 삭제된 5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21조와 별표2에서는 주차장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9가지로 구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내용은 개정전

의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과태료처분 대상에서 삭제된 5건은 지난 1999년 2월 8일자로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과 동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가 개정 삭제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현행 주차장법과 개정조례안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